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
----------	---

제안연월일 : 2026. 6. .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평창군 임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을 관내 임자재 취급업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평창군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 추진 필요성

- 보조사업자 및 공급업체의 행정 절차 부담 경감
- 보조사업 청구·정산 서류 간소화를 통한 민원불편 해소
- 반값 농업용자재 지원사업과 동일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일원화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임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 자재 공급실적 관리 및 위탁금 집행·정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협약에 정하는 사항

라. 민간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공고 및 위원회 심사·선정('26. 11. ~ 12.)
- 위탁협약 체결('26. 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사업대상: 200임가
- 사 업 비: 400백만원(군비 200, 자부담 200)
- 산출근거
 - 임가 경영면적별 9개 구간을 설정하여 차등 지원
 - * 평균 2,000천원 × 200농가 × 50% = 200,000천원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임가의 임자재 구매는 지역의 농협 및 농약사·종묘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 보조사업 방식은 신청·정산에 필요한 서류 구비가 복잡하여 임가의 행정적 부담이 큰 실정임
- 임업인의 행정 부담 경감과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절차 간소화가 필요함
- 농번기 수요에 맞춘 임자재의 적기 공급과 임가의 구매 편의성

제고, 보조금 신청·정산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내 임자재 유통·판매업체를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함

- 이에 일정요건 이상의 기준을 갖춘 임자재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아.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반값 임업용자재 공급업체 현황(2026년)

읍면별	24개소	공급업체 (농협 6, 농약·종묘사 18)
평창읍	5	1. 평창농자재마트 2. 평창희망농약사 3. 평창농협 4. 흥농종묘사 5. 산림조합
방림면	1	1. 농업회사 대진
대화면	5	1. 대화농협 2. 중앙종묘사 3. 대동영농산업 4. (주)대동상사 5. 대풍농약종묘사
봉평면	3	1. 현대종묘사 2. 봉평농약종묘사 3. 봉평농협
용평면	1	1. 유기농사람들
진부면	7	1. 농우 2. 고랭지종묘사 3. 천지인농자재 4. 늘푸른농자재마트 5. 진부농협 6. 치악종묘사 7. 진부농약사
대관령면	2	1. 대관령농협 2. 대관령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사업소

○ 읍면별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현황(2026년)

(단위 : 원)

읍면별	대상자	사업비 (보조금)
합계	160 농가	330,600,000 (165,300,000)
평창읍	15	30,600,000 (15,300,000)
미탄면	13	20,200,000 (10,100,000)
방림면	10	16,000,000 (8,000,000)
대화면	25	42,100,000 (21,050,000)
봉평면	35	83,600,000 (41,800,000)
용평면	16	35,400,000 (17,700,000)
진부면	40	91,100,000 (45,550,000)
대관령면	6	11,600,000 (5,800,000)

관계법령(지침)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9.4.12.]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2.3.>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